

환경 행정기구 확장의 의의

- 환경청의 기구확장에 즈음하여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장
法博 具 然 昌

1986년 10월 23일은 우리 나라 환경행정조직의 발전중에 있어 하나의 획기적인 날이 아닐 수 없었다. 대폭적인 환경청의 기구 확장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확정을 보았기 때문이다. 환경청당국은 물론 모든 환경인들이 함께 기뻐해 마지 않을 일대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어느 나라에서건 새로운 행정영역의 발전·확립은 기구의 발전과 함께 실현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행정이 비록 서서히 그리고 점진적이거나 그 機構의 확충·강화와 함께 진행되어 왔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환경 행정의 발전 과정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구의 확장이 환경행정의 발전에 先導的 요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의 환경행정 기구의 발전 과정을 一瞥해 보면 「점진적인 발전」 바로 그것이다. 1963년 公害防止法이 제정되었지만 그 법의 집행을 담당할 기관이 없었다. 1967년 2월에 비로소 보사부 환경위생과내에 公害係가 처음으로 탄생되어 공해행정을 다루게 되었다. 그 후 1970년 처음으로 공해방지예산이 책정되었고, 1973년 3월에는 공해계가 衛生局내의 公害課로 승격되었다.

1975년 9월에는 환경위생국내에 다른 3개 課와 함께 大氣保全課와 水質保全課로 분화·확충되면서 공해관리관제도를 설치하였다. 그러다가 環境保全法案의 준비 작업과 때를 같이하여 1977년 3월에는 환경위생국으로부터 분리시켜 보사부차관 직속하에 環境管理官制度를 두고 그 아래 환경기획과·대기보전과·수질보전과를 두었다. 이 환경관리관 및 3개과의 체제는 형식

“
우리나라 환경행정 기구의 발전
과정은 “점진적인 발전” 바로 그것이다.
”

적으로는 환경국을 설치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를 설치한 것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된 것이었다.

환경행정기구의 발전사에 있어 1979년 5월 17일의 故박대통령의 환경행정담당기구 설치에 관한 지시는 또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 당시 환경행정담당기구의 유형으로써 환경부·환경처·환경청의 세 가지 안이 논의되었으나 결국 보사부장관 소속하의 外廳으로써 環境廳을 설치하는 것으로 낙착되었고, 드디어 1980년

1967년에 비로소 보사부 환경위생과 내에 公害係가 처음으로 탄생되어 公害행정을 다루게 되었다.

1월 15일 환경청이 현판식을 가지게 되었다.

둘이켜 보건데, 우리나라 환경행정은 환경청의 신설과 함께 비로소 그 진면목을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봄이 적절할 것 같다. 처음 계획조정국·대기보전국·수질보전국의 3개국 13개과에 200여명으로 출발한 환경청이 그 후 점차 인적요원의 충원과 기구의 확충을 통하여 성장해왔다. 구성면에 있어 중요한 것은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춘천의 6개 도시에 설치된 환경측정관리사무소라 할 것이다. 어쨌든 환경청은 설치된 지 6년반이 지나 본청, 국립환경연구소, 측정관리사무소의 인적요원이 500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이젠 크게 달라졌고, 이에 따라 환경행정도 좀 더 적극화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86 아시안 게임 그리고 '88 올림픽게임과 관련시켜 환경문제를 생각하게 된 것이 환경청 기구확장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청의 설치에 즈음한 논의 당시부터 비롯되었지만, 환경청의 구성확장은 주로 청의 지위를 정부조직체제내에서 部나 處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방향이었다. 그런데 이번의 기구확장은 本廳내 廢棄物管理局의 신설과 6개 지방환경청의 설치이다.

폐기물관리국의 설치는 적시에 이루어진 것 같다. 폐기물규제 및 그 처리문제는 세계 각국에서와 다름없이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환경문제로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생산과 소비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폐기물의 양은 대량화하고 그 질은 다양화하기 시작하였다. 워낙 좁은 국토를 지닌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의 처리 여하가 곧 大氣·水質·土壤의 보전과 깊은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근에 이르러서는 폐기

1970년에 처음으로 公害방지 예산이 책정되고 '73년 3월에 公害계가 위생국 내의 公害과로 승격됐다.

물의 재생 및 자원화가 강력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양상을 달리하게 된 폐기물처리의 규제에 관한 폐기물행정은 그 업무의 양이나 복잡성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환경청 수질보전국 내의 폐기물처리과의 체제로서는 그 기능을 제

“

1980년 1월 15일 드디어 환경청이 현판식을 갖게 되었다.

”

대로 할 수 없음을 절감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안의 국회제출과 때를 같이하여 폐기물관리국을 설치하게 된 것은 폐기물문제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려는 환경청의 의지의 한 표현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환경청의 신설은 적잖이 의외적인 결정이라는 느낌이 들기까지 한다. 왜냐하면 環境保全法이나 汚物清掃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구체적·현실적인 환경규제 행정은 권한위임규정에 의하여 직할시·도가 관장하고, 더 나아가 市·郡·區에 의하여 집행된다. 따라서 환경행정의 강화·확충을 위한 구성상의 확충은 지방자치단체의 빈약하기 짝이 없는 환경전담부서의 확충과 그 인적요원의 증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편적일 것이다.

따라서 지방환경청의 신설은 총무처나 내무부측으로부터의 심한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었다. 더구나 1988년부터 실시될 것으로 계획·준비중에 있는 지방자치제와 관련하여 환경행정의 自治化 요청과도 충돌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청의 신설이 허용될 수 있었던 것은 환경행정의 전문성 인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능력의 확충가능성 곤란에서였다고 보여진다. 1984년 환경청에서 발간한 「環境保全」에 의하면, 현재 道·市·郡에서 다른 관련업무와 함께 환경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만, 그 인적요원의 숫자는 1,200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은 환경전문가가 아닌 일반행정요원이 태반이며, 수시로 전혀 성격이 다른 업

무담당으로부터 전보되곤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현실정하에서는 쉽사리 환경전문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업무를 담당케 할 내무부측의 정책결정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이미 환경행정의 강화를 위하여 환경청에서 환경오염 점검반을 운영해 온 것은 이와 같은 사정을 너무나 잘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행정의 전문화·통일화·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는 현실정하에서 환경행정이란 특별행정을 지역별로 담당할 지방환경청의 설치가 불가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86, '88 양대제전을 맞이하면서廳은본

격적인 환경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구확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은 환경문제의 심각성 및 전국 규모적 성격과 그에 대한 처리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정부의 인식에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환경청의 끊임없는 노력이 견인차의 역할을 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어떻든 이번에 이루어진 폐기물관리국 및 지방환경청의 신설은 우리나라 환경행정에 신국면을 가져다 줌으로써 앞으로의 환경행정의 적극화·과학화·효율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의 기구확장은 환경청내 환경인들의 사기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였을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때로는 백안시당하면서까지도 굳굳하게 한국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
**현실정하에서 환경행정이라는
 특별행정을 지역별로 담당할 지방환경청의
 설치가 불가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환경청내의 환경인들에게 국장급에로의 승진의 기회가 주어진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능력과 의욕을 가진 환경행정전문가로 하여금 계속하여 환경행정을 위해 진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한 점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환경청의 기구확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첨언해 두고 싶은 것이 있다. 첫째, 환경행정의 전

이번에 폐기물관리국을 신설한 것은 폐기물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한 적절한 대처라 볼 수 있다.

문화를 더욱 제고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환경청의 신설이래 환경행정의 전문화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온 것으로 안다. 적잖은 환경청 요원들이 국내외의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연구할 기회를 가졌거나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는 한층 더 이를 권장하고 지원하였으면 한다. 규제를 받는 기업측의 환경전문인력도 높은 자질을 가진 자로 충원되는 경향이 있는바, 전문지식이나 기술에 있어 환경청이 열세에 있어서서는 설득력있는 환경행정이 어렵게 되기 쉽다. 따라서 4급 및 5급 이하의 職에는 일반행정가로서의 충원이 불가결한 경우 이외에는 전문행정가로서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우에 따라서는 官學協同이라는 취지를 실현하는 의미에서 기간을 정하여 대학의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봄직하다.

둘째, 환경요원의 再教育이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環境保全協會 등에서 배출시설관리인 등 환경전문요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환경관계의 지식과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청 자체 직원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요원, 기업의 배출시설관리인 등의 전문화된 재교육을 위한 環境研修院이 환경청 산하에 설치될 필요가 있다.

세째, 환경청이 머잖은 장래 그 지위가 격상되어 環境部나 環境處로 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라도 또 하나의 局 설치가 필요하다. 그것은 자연보호국이다. 내무부와의 소관관계로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입법이나 행정에 적잖은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立法과 함께 그 행정이 일원화되어 환경청에 귀속되어야 할 것이 시급하다.

또한 현재 환경청내에는 해양보전과 관련하여 해양보전담당관제도 밖에 없는바, 해양환경보전

지방 환경청의 신설이 허용될 수 있었던 것은 환경행정의 전문성 인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능력의 확충 가능성 곤란에 서였다고 보여진다.

관계의 부서로서는 너무 빈약한 것 같다. 좀 더 확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네째, 공해병 등 환경보건문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疫學的 연구 및 公害疾病의 자료수집 등을 위한

“

환경 관계업무를 담당하는 타부서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의
주요 관건이 될 것 같다

”

체계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환경전담기구의 확충 못지 않게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부처, 예컨대 건설부·상공부·농수산부·내무부·교통부·동력자원부·수산청·산림청 등에 있어서도 환경관계업무를 관장하는 소규모의 부서를 설치하고 환경관계전문가인 인력을 확보·배치하여야 할 것이 필요하다. 환경청과 같은

전담부처를 설치함과 동시에 모든 환경문제는 이 부처의 소관이니까 기타의 부처에서는 이를 도외시 내지는 방관하여도 된다는 관념이 자칫하면 지배하기 쉽다. 따라서 각부처마다 환경관계업무를 관장하는 課를 설치함으로써, 환경청과의 협력·조정을 효율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부처의 의사결정에 있어 환경적 요인을 처음서부터 배려토록 할 수 있게 된다. *

의식개혁 9대실천요강

정직 모든 생활은 정직에 원칙을 두고 새시대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불신품조를 과감히 추방한다.

질서 모든 생활의 기초를 질서에 두고 이를 체질화하기 위해 국민적 역량을 최대한 경주한다.

창조 왜곡된 미풍양속의 본질을 되찾아 민족정기와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킨다.

책임 모든 공직자는 청렴의무를 준수하고 무사안일등 고질적인 폐습에서 탈피, 스스로를 철저히 책임지는 풍토를 확립한다.

본분 각자가 자기본분에 충실하고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분수 생활주변의 고질화된 각종 낭비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분수에 맞는 생활자세를 정립한다.

주인의식 민주시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회의 부정·비리와 무질서에 대한 건전한 고발정신을 함양한다.

국민화합 지나친 이기주의와 뿌리깊은 파벌, 연고의식을 철저히 불식함으로써 국민화합의 기반을 확충한다.

가정교육 모든 교육은 가정교육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오염되고 후회말고

늦기전에 환경보전